

1.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건축사가 확인한 경우 추후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있을것으로 예상됨
 2. 오히려 건축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구조기술사에게 검토를 받는것이 합당할 것임.
 3. 그이유는 구조도면 작성시 건축물의 마감상태, 각종설비 등이 고려되어 종합적으로 건축에서 판단되고 수정되는데,
 4. 위 1호의 경우 3호의 사항이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질적인 건축물에 해가되는 것으로 판단됨.
- 예-1) 기둥의 크기가 1층과 2층이 다른경우 큰쪽에 맞춰 건축마감을 고려함에 구조기술사가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음.
- 예-2) 건축에서는 설비배관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층고산정을 하는데 구조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시공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책임소재가 따름. 건축과 구조가 서로 협의하여 충분한 구조검토가 되어야함.
5. 작성된 구조도면에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다면 이는 곧바로 공사비의 증가로 이어질것임. 이에대한 피해는 오로지 건축주가 지어야 하는 요즘같이 경기침체인 상황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것임.
 6. 구조사무실에서 작성된 구조계산서에 근거하여 건축에서 구조도면을 작성하면서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7.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작성된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

1)현재의 시스템은 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를 하여 구조계산서에 기술사 도장을 날인하여 납품함으로써 구조설계업무는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건축에서 작성된 구조도면이 구조설계한대로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